



오클랜드 성 김대건 천주교회 장학회 회칙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 칭)

본회는 오클랜드 성 김대건 천주교회 장학회라 칭하고 약칭으로 대건장학회 (이하 장학회)라 칭한다.

제 2 조 (목 적)

본 장학회는 학생들이 학업과 신심 교육을 통하여 하느님이 원하시는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장학 사업과 그밖의 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을 후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

본 장학회의 사무소는 오클랜드 성 김대건 천주교회 내에 둔다.

제 4 조 (사 업)

본 장학회는 제 1장 제 2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 목적의 사업을 한다.

1. 장학금 지급
2. 장학금 모금 및 이를 위한 행사
3. 기타 본 장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 사업

제 2 장 조직과 임원

제 5 조 (조직과 임무)

1. 지도신부: 본당 신부가 담당하며 장학회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한다.
2. 위원장: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사업 및 각종 회의와 행사를 주관한다.
3. 총무: 위원장을 보좌하며 장학회의 각종 회의자료 정리, 문서작성 및 보관, 장학사업 업무 및 외부와의 섭외와 홍보 그리고 재정 집행을 담당한다.
4. 운영위원회: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 및 의사결정을 위하여 장학회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
5. 장학위원: 총회에서 다음 각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.
 - (1) 본 장학회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과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(2) 회칙 및 운영 시행 세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
 - (3) 장학금 수혜자의 선발에 관한 사항
 - (4) 장학금 수혜자 선발 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
 - (5) 장학금 모금 및 이를 위한 행사 및 부대 사업에 관한 사항

제 6 조 (임원과 장학위원의 선출)

1. 위원장: 본당 사목회의의 추천으로 지도신부가 임명한다.

2. 총무: 위원장이 추천하여 지도신부가 임명한다.
3. 장학위원: 위원장이 추천하여 지도신부가 임명하며, 본 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를 포함하여 11명의 장학위원을 둔다.
4. 운영위원: 본 위원회 위원장과 총무를 포함하여 5명의 운영위원을 두며, 운영위원은 장학위원장이 선출한다.

제 7 조 (임 기)

1.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번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
2. 총무 및 장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횟수에 제한이 없다.
3. 운영위원의 경우 특별한 임기를 두지 않으며 장학위원장에게 일임한다.
4. 위원장과 총무 및 위원이 임기중 자격이 상실되면 잔여 임기도 상실된다.
5. 임기중 위원장과 총무 및 위원중 결원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1개월 내에 본 회칙 제 2 장 6 조에 의거 결원을 보충해야 한다.

제 3 장 회 의

제 8 조 (회 의)

본 장학회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장학생 선발회의, 운영위원회회가 있으며, 각 회의의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.

1. 정기총회는 매년 4월에 소집하며, 본 장학회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과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, 회칙 및 운영 시행 세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, 당해년도 장학금 수혜자의 선발 기준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발표한다.
2. 임시총회는 재적 장학위원 1/2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,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하며 정기총회에서 다루는 모든 의제를 다룰 수 있다.
3. 장학생 선발회의는 매년 6월 중 위원장이 정하는 날짜에 열리며, 장학회 운영 세칙에 있는 장학생 선발기준에 따라 해당년도 수혜 장학생을 최종 선발한다.
4. 운영위원회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수시로 갖을 수 있고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.

제 9 조 (의 결)

1. 본 장학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 10 조 (재 정)

본 장학회의 장학금과 제반 경비는 본당의 보조와 후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 11 조 (회계년도)

본 장학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.

제 12 조 (재정집행)

본 장학회 재정의 집행은 총회의 결의로 총무가 집행한다.

제 5 장 활동 사항

제 13 조 (일반 활동)

위원회는 매년 장학생을 모집하고 선발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. 단 장학금 운영 세칙 및 장학생 선발 기준은 총회에서 토의하고 의결하여, 지도신부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고 시행한다.

제 14 조 (장학 후원회)

위원회는 장학 후원회를 조직하고 장학 기금을 모금함으로써 본 위원회의 사업을 확충하고 재정을 총당한다.

제 15 조 (장학모금 활동)

위원회는 장학금 모금 및 이를 위한 행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며, 이를 통해서 본 장학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.

제 6 장 보 칙

제 16 조 (회칙의 변경)

본 회칙의 제정과 개정은 위원회에서 재적 장학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하며 지도신부의 승인으로 시행한다.

제 17 조 (통상 규례)

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.

제 18 조 (시행 세칙)

본 회칙의 실행과 장학생 선발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 1 조 (효력 발생)

본 회칙은 지도신부가 승인한 2011년 4월 19일 부로 효력을 발생한다.

(4/17/2011 revised)